

## 종 법(宗法)

### 법계법

**제15조** 1. 본종의 법계는 승려의 수행능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으로서 위계질서의 기본으로 한다.

2. 법계품수자는 종단의 책무와 권위를 가진다.

**제16조** 법계품수자 및 미품수자의 위계서열은 다음과 같다.

1. 법계품수자는 법계 급수에 의한다.

2. 동급 법계자는 법계 품수 순위에 따른다.

3. 법계 미품수자는 종단의 책무를 가질 수 없다.

4. 법계 마품수자는 법계 품수자를 따라야 한다.

**제17조** 본종 법계의 명칭과 급수는 다음과 같다.

등 급	특별급	1 급	2 급	3 급	4 급	5 급
명 칭	대종사	종사	종 덕	대 덕	중 덕	대 선

**제18조** 법계의 승서는 고시위원회의 고시 및 전형에 의하여 종정이 품서한다.

**제19조** 1. 법계고시는 2년마다 총무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2. 학덕을 겸비하고 해행이 탁월하거나 종단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는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특별 전형 할 수 있다.

3. 특별전형은 총무원장의 요청으로 일정한 시기를 정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.

4. 종사 이상의 법계는 총무원장 추천으로 특별전형하여 종정이 품서한다.

**제20조** 법계고시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	연 령	승 략	학 력	경과년수	비 고
대종사	55세 이상	30세 이상	대졸 대교	종정 종사품수 10년 경과	* 승랍의 인정은 고시위원회의 결정으로 승랍의 가산을 인정할 수 있다.
종 사	50세 이상	25세 이상	대졸 대교	종덕품수 10년 경과	
종 덕	40세 이상	20세 이상	대졸 대교	대덕품수 5년 경과	
대 덕	35세 이상	15세 이상	대졸 대교	중덕품수 5년 경과	
중 덕	30세 이상	10세 이상	고졸 사교	대선품수 5년 경과	
대 선	25세 이상	5세 이상	고졸 사교	수계득고 후 5년 경과	

- 제21조** 1. 법계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된 자에게는 법계증서를 수여한다.  
2. 법계증서를 받은 자는 법계취장을 패용할 수 있다.  
3. 법계취장의 요건과 종별은 종규로 정한다.

**제22조** 법계고시 또는 전형에 있어 기본 요건을 판단하는 자료에 부정 또는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이미 수여한 법계를 무효로 할 수 있다.